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의무 적용대상으로 중·대형 상용차가 추가됨에 따라 중·대형 상용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미달성했을 경우 과징금 산정방법 신설 필요

3. 주요내용

가.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미달성 시 과징금 산정방법 신설(안 별표 14)

- 1)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6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자동차 제작사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간 중·대형 상용차는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의무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과징금 산정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음. 중·대형 상용차가 금번에 의무 적용대상이 됨에 따라 과징금 산정방법 등을 규정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2 중 “법 제2조제21호”를 “법 제76조의2”로 한다.

별표 14 제1호 중 “(未達成量)(g/km)”를 “(未達成量)”로, “요율[원/(g/km)]”을 “요율”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제3호에 가목과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온실가스 평균배출량”이란 자동차 제작업체가 판매한 모든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합계를 자동차 판매 대수로 나누어 산출한 평균값을 말하며, 화물운송 목적의 자동차의 경우 평균적재중량을 반영하여 산정한 평균값을 말한다.

가. 15인승 이하 승용·승합 및 총중량 3.5톤 미만이고 최대적재량 1톤 초과인 화물자동차

해당 연도	과징금 요율[원/(g/km)]
2014년부터 2016년까지	10,000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0,000원
2020년 이후	50,000

나. 승차정원이 16인승 이상인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이 1톤 초과이거나 총중량 3.5톤 초과인 화물자동차, 총중량이 3.5톤 초과인 특수자동차, 법 제2조제13호 나목에 따른 덤프트럭

해당 연도	과징금 요율[원/(g/t · km)]
2027년부터 2030년까지	500,000원
2031년부터 2032년까지	1,400,000원
2033년 이후	2,200,000원

부 칙

이 영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0조의2(매출액 범위) 법 제76 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u>법</u> <u>제2조제21호</u> 에 따른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준수 하지 못한 연도의 매출액을 말 한다.	제60조의2(매출액 범위) ----- ----- ----- <u>법</u> <u>제76조의2</u>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교통환경과	
연 락 처	(044) 201 - 6921